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1.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09.11.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황 동 연 세무2과장

가. 제안이유

1)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전면 재검토·조정,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

2) 구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근거법령 관련조문 반영(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 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반영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택”의 범위 명확화(안 제14조)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4)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9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 개선

5) 기타 감면규정 정비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 (안 제25조)

- (현행) 개별 조문에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함
- (개정)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치성 부동산 등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나)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부칙 제2조)

-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1. 1. 1.로 한시적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시달됨으로서 기한 연장,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 및 재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 (1)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근거조문을 추가
- (2)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서 “설치 . 운영”으로 변경하여 감면 요건을 강화
- (3)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으로 이관예정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
- (4) 안 제5조에서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없는 시설 삭제
- (5) 안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2항, 안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에 있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라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에 관한 문구를 개별 조문에서 신설된 안 제25조(감면 제외대상)로 이관하여 총괄 명기
- (6)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을 삭제
- (7)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8) 안 제15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

(9)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수익사업 토지 및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폐지로 삭제

(10) 안 제19조에서는 지방세법 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1000분의 1.5를 적용 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88조”를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변경하고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

(11) 제 27조(감면자료의 제출)의 구청장에게 감면을 받기 위한 감면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절차에 근거 하도록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라는 문구 추가

(12) 부칙에서는 적용시한 1년 연장 및 일반적 경과조치 조정을 위해 제1조에서 이 조례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에서 “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

(13)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